

대통령령 제 호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구상채권의 매각)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(구상채권의 매각) 법 제13조제4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.